

정 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상호) 이 회사는 주식회사 모토닉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MOTONIC CORPORATION 이라 표기 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
2. LPG 및 CNG 연료기기 제조 및 판매
3. 산업용 엔진부품 제조 및 판매
4. 각종 다이캐스팅 제품의 제조 및 판매
5. 각종 금형 제작 및 판매
6. 전자,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
7. 각종 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
8. 차량개조 사업
9.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사업
10. 수출입업
11. 환경관련 사업
12.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업
13. 상기 각호에 관련한 부대사업

<개정 2008.3.21>

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
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,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>

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motonic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11.3.18, 2015.3.20>

제2장 주 식

제5조(발행예정 주식의 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6조(일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7조(주식의 종류)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②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 <신설 2015.3.20.>

제7조의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①이 회사가 종류주식으로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(이하 이 조에서는 “종류주식”이라 함)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의 범위 내로 한다. 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②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.5% 이상 2%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 <신설 2015.3.20>

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
<신설 2015.3.20>

⑤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<신설 2015.3.20>

⑥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제8조(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. <개정 2019.3.22>

제9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 <개정 2015.3.20>

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

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신설 2015.3.20>

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신설 2015.3.20>

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<신설 2015.3.20>

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20>

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
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<신설 2015.3.20>

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. 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3.20>

제9조의2 삭제 <2015.3.20>

제9조의3(주식매수선택권) ①이 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<개정 2015.3.20>

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3.20>

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개정 2015.3.20>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
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0>

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<신설 2015.3.20>

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5.3.20>

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0>

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
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
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9조의4(신주의 배당기산일) 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3.21>

제10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
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<개정 2011.3.18>

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<개정 2008.3.21, 2019.3.22>

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8.3.21, 2009.3.20>

제11조 삭제 <개정 2019.3.22>

제12조 삭제

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
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
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3장 사 채

제14조(사채의 발행)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2.3.23>

제14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3.20>

1.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<개정 2015.3.20>

2.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신설 2015.3.20>

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3.20>

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<신설 2015.3.20>

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신설 2015.3.20>

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<신설 2015.3.20>

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14조의3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1.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2.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신설 2015.3.20>

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3.20>

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
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>

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의4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.

<신설 2019.3.22>

제15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19.3.22>

제4장 주주총회

제16조(소집시기)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
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17조(소집권자)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(사장)이 소집한다.

②대표이사(사장)이 유고시에는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18조(소집통지 및 공고)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5.3.20>

③이사·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·감사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 등을 통지·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3.20>

④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, 사업개요 등을 통지·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1, 2009.3.20>

제18조의2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공장 소재지(대구광역시)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 2008.3.21>

제19조(의장)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(사장)로 한다.

②대표이사(사장)가 유고시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19조의2(의장의 질서유지권)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20조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21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이 회사,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,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<개정 2008.3.21>

제22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23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24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25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5장 이사 · 이사회

제26조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27조(이사의 선임)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28조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 <개정 2008.3.21, 2009.3.20, 2011.3.18>

② 삭제 <2008.3.21>

제29조(이사의 보선)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사외이사가 사임 ·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

여야 한다.

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30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(회장) 1명, 부회장 약간명, 대표이사(사장) 1명 이상, 부사장 약간명, 전무이사 약간명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>

제31조(이사의 직무) ①대표이사(회장) 및 대표이사(사장)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(회장), 대표이사(사장)를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.

③대표이사 중 1인이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가 단독 혹은 각자 그 직무를 수행하고, 대표이사(회장) 및 대표이사(사장)가 모두 유고시에는 부회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(다만, 같은 직급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)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31조의2(이사의 의무)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⑤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31조의3 삭제 <2019.3.22>

제31조의4(이사·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(집행임원을 포함한다)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
②이사(집행임원을 포함한다)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설 2015.3.20>

제32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 <개정 2015.3.20>

②이사회는 대표이사(회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3.20>

③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15.3.20>

제33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<개정 2015.3.20>

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<개정 2012.3.23>

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34조(이사회의 의사록)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3.21>

제35조 삭제 <2008.3.21>

제36조 삭제 <2008.3.21>

제37조(이사의 보수)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한도를 정한다.

<개정 2008.3.21>

②삭제 <2002.3.22>

제38조(상담역 및 고문)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5장의2 감사

제38조의2(감사의 수와 선임)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하며, 상근으로 한다. 감사는 이사회에 사전 승인 없이 이 회사의 업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다른 업무를 겸할수 없다.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임한다. <개정 2015.3.20>

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15.3.20.>

제38조의3(감사의 임기)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 <신설 2008.3.21>

제38조의4(감사의 보선)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3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8.3.21>

제38조의5(감사의 직무)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5.3.20>

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신설 2015.3.20>

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5.3.20>

⑧감사에 대하여는 제3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38조의6(감사록)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3.21>

제38조의7(감사의 보수)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한도를 정한다.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3.21>

제6장 계 산

제39조(사업년도)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0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(사장)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
2. 손익계산서
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<개정 2008.3.21, 2012.3.23>

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<신설 2012.3.23>

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 <신설 2012.3.23>

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
2.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
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(사장)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3.23>

⑥대표이사(사장)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

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3.21, 2012.3.23>

⑦대표이사(사장)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1, 개정 2012.3.23>

제40조의2(외부감사인의 선임)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5.3.20, 개정 2019.3.22>

제41조(이익금의 처분)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 <개정 2008.3.21>

1. 이익준비금 <개정 2008.3.21>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6. 삭제 <2008.3.21>

제42조(이익배당)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
<개정 2012.3.23>

②삭제 <2012.3.23>

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08.3.21>

제42조의2 삭제 <2015.3.20>

제43조(배당금 지급청구서의 소멸시효)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
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<개정 2008.3.21>

부 칙 (1974.3.7)

제1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197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.3.14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3.13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8.3.19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9.3.18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3.16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3.16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3.22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2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3.21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3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3.20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3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3.18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3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3.23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3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3.20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41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 정관의 개정 당시 이미 발행된 주식의 수는 이 정관의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.

②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 정관의 개정 당시 이미 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이 정관의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.

③제1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 정관의 개정 당시 이미 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이 정관의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 (2019.3.22)

제1조 (시행일) 본 개정 정관은 제4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의4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